|  |  |  |
| --- | --- | --- |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징수에 따른 본사 및 지점 시범납세자의 증치세 납세신고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22호<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본사 및 지점 시범납세자의 증치세 계산 납부 임시방법에 관한 통지>(재세(2012)84호), <국가세무총국의 베이징 등 8개 성, 시 지역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징수 시범 증치세 신고납부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43호)의 관련 규정에 의거,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 징수하는 시범기간 중의 본사 및 지점 시범납세자의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비준을 받아 재세(2012)84호 문건을 적용하여 증치세를 계산 및 납부하는 본점기구 시범납세자(이하 “본점”으로 약칭)와 시범지역에 있는 지점은 응당 본 공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2. 본점의 신고납부 관련 사항(1) 본점은 규정에 따라 일괄 계산한 본점 및 그 지점의 증치세 징수대상 매출액,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증치세 납세신고표(증치세 일반납세자용)>(이하 “주 신고표”로 약칭)를 작성하고 첨부자료의 유관 기재란과 대응시킨다. (2) 규정에 의거, 본점이 일괄 계산하는 증치세 납부세액에서 지점의 증치세 납부세액, 영업세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본점은 이를 일괄 계산하여 주 신고표 제28란의 “분할 예납세액”에 기입한다. 당기 공제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기로 이월하여 계속 공제할 수 있다. 즉, 당기에 지점이 이미 납부한 증치세 세액과 영업세 세액이 본점이 일괄 계산한 증치세 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제28란 “분할 예납세액”에 공제 가능한 금액만 기입한다. (3) 본점은 상응하는 장부를 설치하고 세금 공제 감면현황을 기록하여 조사 열람에 대비해야 한다. 3. 시범지역 지점의 납세신고 관련 사항(1) 시범지역 지점은 예납징수율을 기준으로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매출액을 계산하고 주 신고표 제5란 “간이징수법에 따른 매출액 세액 징수”에 기입한다. 예납징수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치세 납부세액은 주 신고표 제21란 “간이징수법으로 계산한 납부세액”에 기입한다. (2) <증치세 납세신고표 첨부자료(1)>(첨부문건)의 내용을 조정하여 “간이 세액계산방법에 따른 징수”란에 “예납징수율 %”란을 추가로 마련한다. 동 란은 시범지역에 소재하는 지점에서 예비 징수하는 증치세 매출액, 납부세액 작성시에 적용한다. (3) 시범지역 지점이 화물을 판매하거나 가공수리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증치세 임시조례 및 유관 규정에 따라 귀속지역에서 증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매출액, 매출세액은 유관 규정에 따라 주 신고표에 기입하고 첨부자료의 상응하는 란에 대응시킨다. (4) 시범지역 지점은 조세 및 인증 등 사항의 참조 발송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당기 매입세액을 주 신고표에 기입하고 첨부자료의 상응하는 란에 대응시킨다. 본점이 일괄계산하는 매입세액은 <증치세 납세신고표 첨부자료(2)> 제17란 “간이징수법 징수항목용”에 작성하여 전출처리한다. 4. 각 지역 세무기관은 본점 및 지점 시범납세자의 증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홍보 및 지도업무를 잘 이행해야 한다. 5. 본 공고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정 이후 <증치세 납세신고표 첨부자료(1)>는 바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징수 시범지역 일반납세자에게 적용된다.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43호 첨부문건 1 중 <증치세납세신고표 첨부자료(1)>은 동시에 폐지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문건：증치세 납세신고표 첨부자료(1)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12307179.files/n12307180.xls>국가세무총국2013년5월7일 |  | **关于营业税改征增值税总分机构试点纳税人****增值税纳税申报有关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22号根据《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总分机构试点纳税人增值税计算缴纳暂行办法〉的通知》（财税〔2012〕84号）、《国家税务总局关于北京等8省市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增值税纳税申报有关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43号)有关规定，现将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期间总分机构试点纳税人增值税纳税申报有关事项公告如下：　　一、经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批准，适用财税〔2012〕84号文件，计算缴纳增值税的总机构试点纳税人（以下简称总机构）及其试点地区分支机构，应按照本公告规定进行增值税纳税申报。　　二、关于总机构纳税申报事项　　（一）总机构按规定汇总计算的总机构及其分支机构应征增值税销售额、销项税额、进项税额，填报在《增值税纳税申报表(适用于增值税一般纳税人)》（以下简称申报表主表）及附列资料对应栏次。　　（二）按规定可以从总机构汇总计算的增值税应纳税额中抵减的分支机构已纳增值税税额、营业税税额，总机构汇总后填报在申报表主表第28栏“分次预缴税额”中。当期不足抵减部分，可结转下期继续抵减，即：当期分支机构已纳增值税税额、营业税税额大于总机构汇总计算的增值税应纳税额时，在第28栏“分次预缴税额”中只填报可抵减部分。　　（三）总机构应设立相应台账，记录税款抵减情况，以备查阅。　　三、关于试点地区分支机构纳税申报事项　　（一）试点地区分支机构将按预征率计算缴纳增值税的销售额填报在申报表主表第5栏“按简易征收办法征税销售额”中，按预征率计算的增值税应纳税额填报在申报表主表第21栏“简易征收办法计算的应纳税额”中。　　（二）调整《增值税纳税申报表附列资料（一）》（附件）内容，在“简易计税方法征税”栏目中增设“预征率 %”栏，用于试点地区分支机构预征增值税销售额、应纳税额的填报。　　（三）试点地区分支机构销售货物和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按增值税暂行条例及相关规定就地申报缴纳增值税的销售额、销项税额，按原有关规定填报在申报表主表及附列资料对应栏次。　　（四）试点地区分支机构抄报税、认证等事项仍按现行规定执行。当期进项税额应填报在申报表主表及附列资料对应栏次，其中由总机构汇总的进项税额，需在《增值税纳税申报表附列资料（二）》第17栏“简易计税方法征税项目用”中填报转出。　　四、各地税务机关应做好总分机构试点纳税人增值税纳税申报的宣传和辅导工作。　　五、本公告自2013年6月1日起施行。调整后的《增值税纳税申报表附列资料(一)》同时适用于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地区增值税一般纳税人，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43号附件1中的《增值税纳税申报表附列资料（一）》同时废止。　　特此公告。　　附件：增值税纳税申报表附列资料（一）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12307179.files/n12307180.xls>　　国家税务总局　　2013年5月7日 |